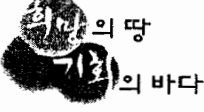
 <b>국토해양부</b> <small>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small>	<b>보 도 자 료</b>		 <b>국민의 땅</b> <b>기차의 바다</b> <small>국토해양부</small>
	배포 일시	2009.10.5(월) / 총 9매	
담당 부서 : 종합교통정책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구분환, 사무관 이지혜, 주무관 선기운</li> <li>• ☎ (02)2110-8657~8</li> </ul>	
보 도 일 시	10월 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 -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등 연계시설 설치의무화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09.6.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배출량도 '90년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먼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하였다.

-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산정한 구체적인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단별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②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 ③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지정요건은 (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2) 관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3) 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수송분담구조 등

④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별도고시)하도록 하였다.

\* 대상 개발사업 :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 또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토록 하였다.

⑤ (Eco-Drive 인증제 도입) 운전행태에 따라 20-30%의 연료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운전과 관련해서는,

- 내년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제(인증마크 부착)**가 도입되어 경제운전 확산 및 연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⑥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대형중량화물 기준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또는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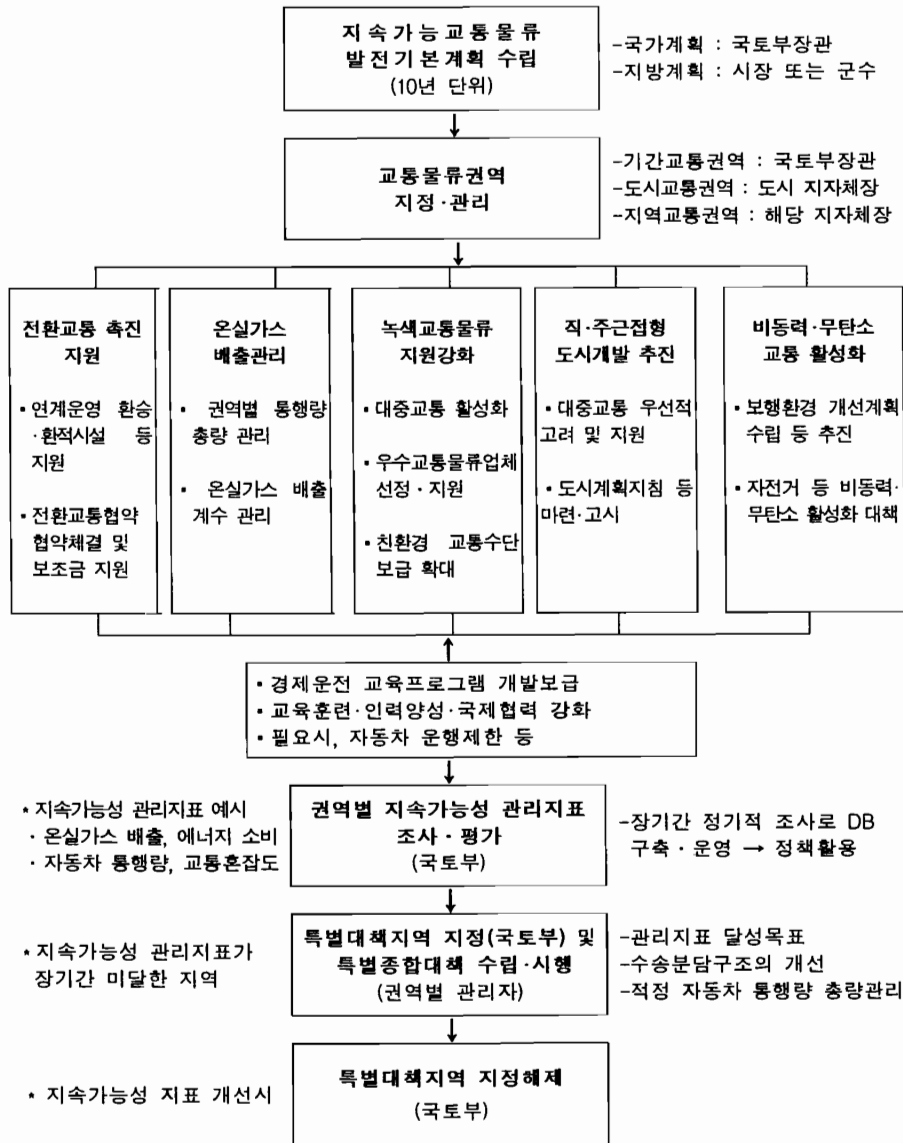
-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09.10.7~26) 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Tel. 02-21108657~8, Fax 02-504-9199)로 제출하면 되며,

-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체계도



## 참고 2 사전거보관소 등 연계시설 확보대상 개발사업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3.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
5.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시설
6.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시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1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1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1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1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1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및제15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24.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25.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참고 3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동향

□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 변화협약('92) 및 교토의정서 채택('97) 등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중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나 제1차 의무 기간(2008~2012)에는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EU, 일본 등은 2008-2012년간 배출량은 '90년대비 평균 5.2%를 감축 하되, 국가별로 차등화(미국, 호주는 불참)

○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발리 로드맵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등 압력은 거세어질 전망

- \* Post-2012 협상로드맵(발리로드맵, '07.12월)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작업일정을 제시
  - 개발도상국의 지속발전을 고려한 적절한 감축 행동 제시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방법, 기술, 자원 지원 연계 등)
  - '09년까지 범지구적 장기감축을 위한 협상 완료 예정

○ 국제사회는 OECD 회원국이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Post-2012 체제에서는 국가위상에 합당한 의무를 부담해 주길 희망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CO2 배출지표 (2005년, IEA)
  - 연간 배출량 : 4.62억톤 CO2 (세계 배출량의 1.7%, 10위)
  - CO2 누적배출량(1850-2000년) : 전세계의 0.7%, 세계 23위
  - 1인당 연간 CO2 배출량 : 9.48톤 CO2 (세계 27위)

### 참고 4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련 통계

□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 : 천TOE, %

부문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비중	연평균증가율 90~00	00~07
산업	36,150	83,912	85,158	89,197	90,805	92,992	94,366	97,235	104,327	57.49	8.79	3.16
수송	14,173	30,945	31,909	33,763	34,632	34,615	35,559	36,527	37,068	20.43	8.12	2.61
가정상업	21,971	32,370	32,893	34,299	34,965	34,807	36,861	35,986	35,916	19.79	3.95	1.50
공공기타	2,812	2,625	2,989	3,191	3,593	3,595	4,068	3,836	4,144	2.29	-0.69	6.74
합계	75,106	149,852	152,949	160,450	163,995	166,009	170,854	173,584	181,455	100.0	7.15	2.77

자료 : 에너지통계연보, 2005., TOE: Tons of Oil Equivalent

□ 부문별 연간 이산화탄소배출량

(단위 : 백만 CO<sub>2</sub>톤)

구분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비중)	가정·상업·공공·기타	탈부성 배출	합계
1990	38	82	42.4 (17.1)	79.9	5.4	247.7
1995	83.2	124.2	77.2 (20.7)	84.3	3.2	372.1
2000	125.9	141.8	87.1 (19.9)	79.3	4.4	438.5
2002	146.8	148.3	94.9 (20.1)	78.2	4.8	473
2004	165.3	148.5	97.1 (19.9)	72.5	5.7	489.1
2005	171.1	148.2	98.2 (19.7)	75.2	5.9	498.6

주 : ( )값은 에너지부문 전체 중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DB, 2008

□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CO<sub>2</sub> 배출추이

(단위 : 백만 CO<sub>2</sub>톤)

구분	1990	1995	2000	2002	2004	'90-'04
						연평균증가율(%)
교통	42.2 (100.0)	77.2 (100.0)	87.1 (100.0)	94.9 (100.0)	97.1 (100.0)	6.1
철도	0.9 (2.1)	1.0 (1.3)	1.0 (1.1)	1.0 (1.1)	0.9 (0.9)	0.0
도로	33.3 (78.9)	62.9 (81.5)	69.2 (79.4)	77.8 (82.0)	80.9 (83.3)	6.5
해운	5.3 (12.6)	11.5 (14.9)	15.0 (17.2)	14.1 (14.9)	13.0 (13.4)	6.6
항공	2.7 (6.4)	1.3 (1.7)	1.4 (1.6)	1.4 (1.5)	1.2 (1.2)	-5.6
기타	0.0 (0.0)	0.5 (0.6)	0.5 (0.6)	0.6 (0.6)	1.1 (1.1)	9.2

주 : 1. ( )는 수송부문 전체에 대한 비중임  
 2. 기타부문 연평균증가율은 '95~'04 기준임

□ 주요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단위 : 백만 CO<sub>2</sub>톤)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1990	1,484	216	119	164	120	104
1994	1,601	248	122	175	128	113
1995	1,625	256	121	179	130	115
1996	1,666	262	126	179	131	117
2000	1,825	264	128	184	138	124
2005	1,882	253	135	166	141	132
2006	1,868	250	137	162	140	133

자료 : UNFCCC Data Interface

□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 원단위

단위 천TOE(Ton of Oil Equivalent)

구분	도로	철도	항공	해운	합계
백만인 · km당	0.11	0.01	0.24	2.86	3.22
백만톤 · km당	1.03	0.03	12.27	0.09	13.42

\* 자료: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참조.